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가합4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진정명의회복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변론 종결 2020. 6. 17

판결 선고 2020.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 C, D, E, F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한다)에 관하여 별지 2지분상속표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G생 망 H은 슬하에 망 I 등 아들 5명을 두었고, 망 H이 사망하자 망 I가 호주상속허가를 받아 그 상속인이 되었다.

망 I는 1954. 2. 3. 사망하였고 망 J은 장남으로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소외 B, C, D, E, F(이하 'B 등 5인'이라 한다)는 망 I의 자녀이다.

이처럼 B 등 5인은 망 H의 상속인인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이 1912년경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K 외 20필지(이하 '상속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I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 등 5인의 조상인 망 H이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상속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 토지는 그 이후 분필 및 지번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고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피고가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2지분상속표에 의하여 B 등 5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 등 5인으로부터 2019.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B 등 5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터프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 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사정은 토지소유권 관계의 출발점을 이루고,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38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일제강점 기 시절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이 1912년경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상속 토지의소유자 이 B 등 5인의 조상인 망 H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민성철판사 천무환판사 강면구

별지